

03

광주광역시 청년프리랜서 실태와 권리개선 방안

오창민(Oh Chang Min)

경제문화공동체 더함 이사

power2people@naver.com

청년프리랜서는 부당계약, 불공정 과업, 보수 미지급, 저작권 침해 등에 있어 보호받기 어려운 위치에 있는데, 이를 개인의 역량 부족으로만 다루는 것은 문제이다. 광주 청년프리랜서들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업종별 표준계약서 작성, 적정 단가 산정 및 보장 방안 마련, 인권침해나 계약 관련 법률상담, 피해구제 지원 등이 이루어지길 원하나, 현재 지역에서 프리랜서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할 기관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 향후 프리랜서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공정거래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기관 설치, 프리랜서 조직화 지원, 프리랜서 전문성 제고 및 경력형성 지원, 사회안전망 제공 등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키워드: 청년프리랜서, 공정거래, 표준계약서, 고용보험 확대, 전문성 제고

1. 광주지역 청년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

■ 광주 청년프리랜서의 일반적 특성

- 2021년 7월 청년프리랜서 142명을 대상으로 한 「광주지역 청년프리랜서 실태조사」(광주 비정규직지원센터) 결과, 응답자 중 여성은 66.9%, 남성은 31.7%, 20대 63.4%, 30세~34세 36.6%로 나타났다. 응답자 대부분은 비혼(82.4%), 4년제 대학졸 이상(84.5%)이고, 10명 중 4명(35.2%) 가까이는 부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청년프리랜서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가 전체의 66.4%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IT·디자인·출판(42.3%), 강사·교육(38.7%), 영업·플랫폼(30.7%) 등의 직종에 많이 분포하며, 평균 활동 기간은 3.8년으로 나타났다.
- 사업자등록증 보유율은 16.2%이며, 남성(28.9%)의 보유비율이 여성(10.5%)보다 높았으며, 전체적으로 연령대나 경력, 학력이 높을수록 사업자등록증 보유비율이 높았다. 응답자가 가장 많은 문화·예술 분야 청년프리랜서의 보유비율은 다른 직종에 비해 가장 낮았다.
- 겸업프리랜서는 34.5%, 전업프리랜서는 65.5%였다.

■ 노동형태 및 조건

- 2020년 기준 10명 중 3명(32.4%)은 구두계약을 하거나 특별한 계약 없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약서를 쓰지 않고 일하는 이유는 ‘계약서의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계약 안 함’(37.8%), ‘나 혼자 일하는 일이기 때문에 계약 자체가 불필요’,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분위기상 불가능’, ‘관례적으로 구두 계약을 하기 때문’(각 26.7%) 등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 계약 가운데 부적절하거나, 부당한 계약 내용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12.0%였으며, 문화·예술(18.7%), 겸업(16.3%), 경력 5년 이상(18.4%) 프리랜서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부당계약 내용은, ‘부당한 수익배분·대가 지급 강요’(58.8%),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현저하게 오랜 기간 동안 경쟁업자와 계약하지 못하도록 함’(11.8%), ‘구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 용역 등 구입 강요’(5.9%) 등이었다.
- 정부 표준계약서 인지 또는 사용 비율은 70.4%이며, 사용만족도는 보통을 조금 넘는 3.33점을 기록하였다. 정부 표준계약서 개선사항은 ‘불분명한 세부조건’(62.5%), ‘출장비, 숙박비, 식비 등의 내용’(52.1%), ‘사고 예방 및 사고처리에 관한 사항’(43.8%), ‘작업의 범위’(33.3%), ‘작업자 인권 보호’(29.2%),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사항’(27.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광주광역시 업종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의 필요성(5점 척도)은 4.18점, 사용의향은

4.11점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 광주 업종별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시 ‘업종 분야별, 장르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가 되어야 함’(20.4%), ‘업종별 특수한 측면을 계약사항에 잘 담아야 함’(19.0%), ‘프리랜서 권리 보호 중심으로 계약의 내용이 담겨야 함’(17.6%), ‘발주처(공공 기관)에서 먼저 제시하고, 시에서 사용을 적극 독려해야 함’(15.5%),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단체나 조합, 협회 등에서 공식화해야 함’(12.0%), ‘청년프리랜서가 자신의 권익을 수호할 수 있는 계약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어야 함’(10.6%) 등의 순으로 수요가 제시되었다.
- 인권침해나 부당대우 경험 비율은 ‘적정한 수익을 배분받지 못함’(35.2%), ‘일에 대한 지나친 간섭이나 방해’(33.8%), ‘상당 기간 동안 돈을 받지 못함’(30.3%), ‘소요 비용을 현저하게 불리하게 공제해서 받음’(28.9%), ‘언어폭력, 비인격적인 모독적인 처우를 받음’(16.9%),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이용당함’(10.6%), ‘성희롱, 성추행, 성폭력’(9.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인권침해나 부당대우 대처 방식은 ‘일은 끝마치지만, 다시는 상대방과 같이 일하지 않는다’(43.7%), ‘어쩔 수 없이 참고 넘기며 일한다’(32.4%), ‘관계기관(고용노동청, 경찰, 공정위, 인권위 등)에 신고한다’(12.0%), ‘바로 그만두고 상대방과 더 이상 일하거나 관계하지 않는다’(9.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부당노동이나 부당거래 문제 발생 시 해결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갖추어져 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2.18점)가 지배적이었으며, 특히 문화·예술(1.96점), 경력 5년 이상 (1.87점) 프리랜서 집단에서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 최근 3년간 건당 평균 계약 기간 5.4개월(중위값 3.8개월)이며, 2020년 기준, 청년프리랜서의 전체 개인수입은 평균 1,663만원(중위값 1,500만원)이며, 프리랜서일로만 받은 수입은 1,178만원(중위값 910만원)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프리랜서 일을 통한 연소득은 남성(1,285만원), 30세~34세(1,429만원), 영업·플랫폼(1,263만원), 사업자등록증있음(1,482만원), 경력 5년 이상(1,359만원)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 작업, 활동 공간은 ‘계약회사(기관 등)의 사무실이나 지정된 특정 공간’(37.3%)이 가장 많아 작업장 선택의 자율성은 그리 크지 않으며, 본인 명의의 사회보험은 건강보험(86.7%), 국민연금(56.6%), 고용보험(38.1%), 산재보험(28.3%) 순으로 가입률을 보였다. 프리랜서 일 관련 협회나 단체, 노조 등에 가입된 비율은 10.6%를 기록하였다.
- 광주지역 청년프리랜서의 일 관련 만족도를 살펴보면, ‘직무(일의 형태 및 내용, 노동강도 등)’와 ‘작업의 물리적, 공간적 환경’(각 3.25), ‘노동시간’(3.23), ‘협업협력 관계’(3.11), ‘본인 직업으로서 장래성’(2.87), ‘수입’(2.7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대가, 비용 산정이 적정하고 합리적인지에 대해 62.0%는 일에 대한 대가·비용 산정이 적정하지 않고 불합리하다고 응답하였다. 불합리한 이유는 ‘실제 투여된 노동시간을 반영 못 함’(30.6%), ‘대기 노동, 연습 시간 등을 고려 못 함’(21.2%), ‘경제 수준, 물가 수준을 반영 못 함’(20.0%), ‘전문성, 작업의 난도를 고려 못 함’(18.8%), ‘관련 경력을 무시하거나 낮춰 산정’(5.9%), ‘비용지출의 세부 분야들을 고려하지 못함’(1.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청년프리랜서 애로사항 및 필요사항

- 경험과 현실적인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현재 본인의 일 관련 대가, 비용이 적정 수준의 몇 퍼센트 수준인지에 답변하게 한 결과 평균 59.8%(중위값 60.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년프리랜서들은 100만 원의 대가를 받아야 하는데 현재 60만 원 정도만 받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 프리랜서 일 관련 애로사항은 ‘불안한 미래 전망’(27.5%), ‘일거리가 많지 않음’(23.0%), ‘적정 수준의 보수를 받기 힘듦’(16.9%), ‘불규칙한 스케줄’(15.7%), ‘경력증명이 힘듦’(5.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청년프리랜서 처우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으로 ‘청년프리랜서를 위한 경제적 지원(생활보조금 등)’(41.3%), ‘청년프리랜서를 위한 법률·세무·노무 상담 및 대응 지원’(14.1%),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 및 구제’, ‘청년프리랜서 창제작·협업 공간 확충’, ‘청년프리랜서의 경력개발 지원’(각 13.9%)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 광주지역 청년프리랜서를 위해 필요한 사업으로 ‘청년프리랜서 지원분야 다양화, 지속적인 지원’(37.1%), ‘청년프리랜서 전담 지원기관 설립’(14.6%),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지원’, ‘작업공간, 전문 공간 설비’(각 11.8%)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2. 청년프리랜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사점

- 청년프리랜서 10명 가운데 3명은 계약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분위기상 불가능하다고 응답해, 지역 청년프리랜서가 처한 현실은 기본적인 계약서 작성마저 쉽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주 업종별 프리랜서 표준계약서 마련 및 사용에 대한 응답자의 기대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지역 청년프리랜서를 대상으로 문서로 계약을 유도하고 업종별 특화된 표준계약서 교육 추진 및 계약 관련 법률상담 등을 할 필요가 있다.
- 프리랜서 인권침해나 부당대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프리랜서와 계약 시 표준계약서를 작성도록 의무화하고, 민간부문까지 확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작업별 보수 등 프리랜서 계약현황을 파악함으로써 프리랜서 작업별 최저보수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잘 드러나지 않는 청년프리랜서들의 인권침해나 부당대우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지원을 모색하기 위해 불공정거래나 고충에 대한 상담창구를 개설, 운용할 필요도 있다.
- 모든 항목에서 20대보다는 30세~34세 응답자가, 비혼자보다는 기혼자가, 상대적으로 경력이 오래된 응답자가 부당대우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비율이 높았다. 이는 프리랜서로서 종사경력이 길고 경험이 많을수록 인권침해나 부당대우 사례 역시 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준다. 즉, 청년프리랜서들이 겪는 구조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 특히, 문화·예술 분야 청년프리랜서들은 다른 직종에 비해 거의 모든 항목에서 인권침해나 부당대우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의 거래환경, 노동환경이 다른 프리랜서 직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열악하다는 것을 방증한다. 청년프리랜서들이 가장 많이 종사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문화·예술 분야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다.
- 문화·예술 노동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문화·예술 종사자, 프리랜서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그간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은 노동자보다는 문화·예술인이라는 인식을 갖는 측면이 있고, 문화·예술 작업(노동) 또한 자발적인 의사를 통한 민법상 계약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경향이 강해, 노동법의 영역에 포함하지 않으려 했던 게 사실이다. 문화정책의 주된 관심 역시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들이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있었지 이들의 작업(노동) 과정에 대한 관심은 적었다. 문화예술 노동을 노동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아 개선 시켜 나가는 것 역시 광주지역 청년프리랜서 권익 향상과도 맞닿아 있다.
- 광주지역 청년프리랜서들은 다양한 인권침해와 부당대우를 경험하고 있지만, 참고 견디며 개인적으로 처리하거나, 소극적인 대처가 대부분인 것으로 파악된다. 그래서 관련 문제가 지

역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도 많다. 일감제공자와 수주자라는 입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프리랜서가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 법률, 세무, 노무 등 각종 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 광주 청년프리랜서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가입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프리랜서는 기업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가입할 수가 없다. 다만 「예술인복지법」제7조(예술인의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에 따라 예술인들은 ‘예술활동증명’을 받아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용보험은 2020년 12월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징수법」개정안이 국회에 통과됨으로써 향후 소득에 기반하여 모든 취업자에게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다. 향후 정부의 전국민고용보험 로드맵에 맞춰 프리랜서라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또한 프리랜서는 불안정한 수입과 높지 않은 소득 때문에 사회보험을 끼리므로, 일정 소득 이하는 사회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
- 전체적으로 프리랜서 일이 대한 만족도는 3점 내외를 기록하여 보통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프리랜서 일이 갖는 장점이라 할 수 있는 일의 형태 및 내용, 노동강도 등 직무에 대한 만족도와 작업의 물리적, 공간적 환경, 노동시간에 대한 만족도 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지만, 그렇게 긍정적이지는 못하였다. 특히 직업으로서의 장래성이나 경제적 수입은 2점대의 부정적 평가를 보여, 청년프리랜서의 현실과 미래 전망이 그리 밝은 것만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광주지역 청년프리랜서는 일과 관련하여 자신이 전문성을 갖추고 직무와 노동시간, 작업방식 등을 조절하고 자기실현(자기만족)을 해 나가는 ‘진짜’프리랜서와 거리감이 있어 보이고, 현재의 불안과 미래에 대한 전망부재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불안정노동자의 성격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 청년프리랜서는 형식상 자신의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일을 하면서 용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약상대방에 상당히 종속되어 있어, 협상력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다. 특히 노동시간, 즉 실제 투여된 노동시간을 과소 반영하거나, 대기시간·연습시간 등을 관행적으로 제외시키는 등 적정 대가·비용 산정에 있어 불리한 위치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으로 파악된다. 프리랜서의 노동형태나 계약형태가 업종별로 매우 다양하고, 법적 정의도 부재하지만 실질적으로 피고용인의 지위에 있는 프리랜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 프리랜서 일이 시장에서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정당한 보수를 받고 있다면 그나마 괜찮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대부분 ‘1인 도급제’ 형태의 구조 속에서 ‘진짜’ 프리

랜서처럼 완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 청년프리랜서는 하도급구조와 개별적 계약 형태로 인해 교섭력에서 열위를 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프리랜서 일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공정거래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과업내용과 기간 등이 명확하게 설정된 표준계약서 체결, 적정단가 산정 및 보장, 갑질방지 등이 필요하다.

- 광주지역 청년프리랜서의 연수입은 1,500만 원(중위값) 수준이고, 업종별로 하향 평준화된 낮은 소득을 보이고 있다. 극소수의 유명 프리랜서를 제외한 대다수 청년프리랜서는 경제적 어려움과 심리적 불안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무엇보다 공적활동 성격을 지닌 청년프리랜서의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과 후원이 필요하다. 또한, 프리랜서 간 협력과 협업을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리랜서 지원 공모사업’을 발굴하고 진행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이다. 물론 일자리정보 제공(일감매칭), 불공정거래 피해 예방과 구제, 새로운 전문성 습득교육을 통한 경력개발 지원, 법률, 세무, 노무 상담 실시 및 대응지원 등 다양한 형태의 정책지원도 병행 되어야 할 것이다.
- 광주지역 청년프리랜서는 항상적으로 낮은 소득, 고용(일감) 불안정, 심리적 불안감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권리를 보장받고, 전문성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지원분야를 다양화하고 지속적인 지원사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청년프리랜서를 통합적으로 관리·지원하기 위한 전담 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이다. 최근 확산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공유경제(Sharing Economy)와 연계하여 청년프리랜서의 인적·물적 네트워크 확장도 고려해 볼만하다. 공간, 시설, 장비 공유, 프리랜서와 일감(프로젝트나 일거리 정보) 매칭 등 프리랜서의 지역사회연결망을 구축하고, 가시화하는 게 필요하다.
- 청년프리랜서의 권익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처해있는 분절적 직종 노동시장을 개선하고, 노동자성을 인정하며, 그들에게 더 나은 현재적 조건을 충족시켜 미래불안 해소와 발전적 경력이동을 응원하는 형태로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가야 할 것이다.

3. 청년 프리랜서 권리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1) 특수고용관계 프리랜서의 노동자성 인정

- 기술발전 및 산업구조 변화로 특수고용 및 플랫폼 노동자와 같은 고용인이 없는 프리랜서가 증가하고, 계약상 노동자가 아니어도 완전한 자영업자로 구분하기 어려운 노동자들(‘1인 도급’, ‘가짜 사장’)이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계약의 전속성, 상당한 수준의 사용종속성 등이 유지되는 특수고용관계의 프리랜서는 노동자성을 인정하고, 노동관련 법령에서 규정

하는 다양한 보호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노동법상 노동자 개념 확장).

-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비록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노무를 제공하고, 사용업체는 이를 통해 상당한 이익을 취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계약관계를 위해서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노동3권을 보장하고, 이를 통해 스스로 권리를 구제하고 계약업체와의 집단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 및 프리랜서 노동조건 개선

- 프리랜서 가운데 여전히 계약없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내용보다 업계 관행이 우선 적용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최근 장르별 표준계약서가 마련되고 활용되면서 표면적으로, 형식적으로 개선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존재한다. 표준계약서 실효성 제고를 위해 광주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은 사업(용역)발주 시, 해당 사업 수행업체의 인력 활용계획(프리랜서 계약 등)을 점검하고, 관련 업체의 프리랜서 계약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해야 한다.
- 개별 민간 사업자 간 계약관계에 관여하는 게 한계가 있지만, 사업대상자(에이전시 등) 선정 시 표준계약서 사용을 심사항목에 반영하거나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유인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광주시가 일차적으로 공공기관의 프리랜서 활용실태와 보수 등 계약현황을 파악하고, 분야별, 업무작업별 ‘최저보수기준’(단가) 등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광주광역시 생활임금 체계가 프리랜서 생태계에 반영되도록 노력).
- 불명확한 계약관계와 다단계 산업구조는 프리랜서의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의 문제로 이어진다. 표준계약서를 통해 계약관계를 명확히 하고, 광주시나 공공기관에서는 프리랜서의 불공정거래 피해, 불공정행위에 따른 고충 등을 상담·구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다단계 분배구조의 불합리성을 규제하고 관리감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공정거래 강화).
- 주기적으로 ‘광주광역시 업종별 프리랜서 표준계약서’를 현실에 맞게 제작·개선해 나가고, 표준계약서 이행여부, 활용률 등을 파악하고 점검해야 한다(로드맵 제시). 또한, 지자체가 의지를 가지고 프리랜서를 위한 표준계약서(공정한 노동 기준)가 민간부문에 확산되도록 적극 홍보하고 권장해야 한다.

(3) 전문성 제고 및 경력형성 지원

- 프리랜서의 기본 역량(전문성) 제고를 위한 직업교육훈련을 지원(교육강좌 개설, 직업훈련 교육비 보조 등)하고, 나아가 계약, 세무회계, 저작권, 불공정행위, 노무, 노동인권 등에 대한 교육이나 컨설팅, 법률상담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광주문화재단, 광주관광재단,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광주디자인진흥원 등 문화예술·콘텐츠 분야 공공기관을 중심

(6) 지역 특수고용종사자, (진성) 프리랜서 규모 파악을 위한 연구·조사

- 프리랜서에 대한 공식화된 정의가 없고, 범위도 명확히 규정하기 힘들지만, 제한된 자원 속에서도 관련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정책수요자의 범주를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프리랜서 모집단에 대한 과학적 추정과 조사 도구의 정확한 설계가 필요하다.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전체 프리랜서 규모를 파악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정책 개발 및 법·제도적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함. 특히 프리랜서는 활동 분야, 직종, 숙련도에 따라 편차가 있으므로, 공통의 정책 수요 발굴과 함께 특정 분야 실태 파악도 이루어져야 분야별 맞춤형 정책대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또한, 정기적인 조사 및 연구를 통해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데이터에 기반하여 정책집행·전달체계, 정책효과 등을 측정·평가해야 한다. 더불어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를 위한 다양한 노동정책 실시 및 법제도개선이 병행되어야 한다.